## 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 장 제2절 제2관(발파작업의 위험방지)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중 발생 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, 화약류의 취급, 운반, 저장, 사용 및 작업시 주의사항 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약류를 사용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3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화약류"란 화약, 폭약 및 화공품으로,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총포화약법」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말한다.
  - (나) "폭발"이란 맹렬한 발열반응과 충격파를 동반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.
  - (다) "화약"이란 추진적 폭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「총포화약법」제2조제3항 제1호에 따른 화약을 말한다.
  - (라) "폭약"이란 파괴적 폭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「총포화약법」제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폭약을 말한다.
- (마) "화공품"이란 화약 및 폭약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하 거나, 통이나 관에 채우는 방법 등으로 가공한 공작물로 「총포화약법」제2조 제3항제3호에 따른 화공품을 말한다.
- (바) "최소저항선"이란 피 폭파물의 자유면에서 장약의 중심에 이르는 최단거리를 말한다.